

상호금융업감독규정

<목 차>

1. 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윤송이
	담당부서 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이형주		연락처	02-2100-2983
	과장	김종훈		이메일	2081001@mail.go.kr

2021. 08. 24. 작성

정책 책임자 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		
	2.규제조문	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, [별표1-1], [별표1-3]		
	3.위임법령	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2021.08.26 ~ 2021.10.07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성여신(미사용약정) 및 지급보증은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급격한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에 현재 은행·보험업권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 중이나, ○ 그 외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에 대한 건전성 규제(자산건전성 분류,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등)가 미흡하여, 충당금이 과소하게 적립되는 문제 제기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표적인 지역·서민금융기관으로써, 조합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관계형금융 등을 조성하고,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수행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호금융기관 또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한도성여신*을 취급 중임에도 불구하고, 규제 공백으로 인하여 해당 여신에 대한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무 등은 부재한 상황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'20년말 상호금융업권의 한도성여신 미사용금액은 39.5조원 수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충당금 과소적립 등으로 인해 조합·중앙회의 건전성 악화가 발생할 경우 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 <p>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건전성 악화 및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행·보험업권에서 준용 중인 한도성여신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여 업권간 규제 차이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<p>※ 단, 상호금융은 지급보증 취급불가에 따라 미사용약정 등 한</p>		

		도성여신에 대한 규제만 도입										
	7.규제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상호금융업권의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적립의무 도입 ○ 현재 한도성여신 규제 공백에 따른 총당금 과소적립이 각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및 부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,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, - 한도성여신에 대해 대출자산 등과 같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, 신용환산율*을 적용하여 대손총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* 단 업권 부담을 고려하여 신용환산율의 단계적 적용 · ('22년) 20% → ('23년) 30% → ('24년) 40%								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상호금융업권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)의 단위조합 및 중앙회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유형</th> <th colspan="2">인원수 또는 규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피규제자</td> <td>상호금융업권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)의 단위조합 및 중앙회</td> <td colspan="2">2,225개 조합 및 4개 중앙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	피규제자	상호금융업권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)의 단위조합 및 중앙회	2,225개 조합 및 4개 중앙회	
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									
피규제자	상호금융업권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)의 단위조합 및 중앙회	2,225개 조합 및 4개 중앙회										
	9.도입목표 및 기대효과	상호금융업권의 한도성여신에 대한 총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되고, 각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 기여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비용편익분석 (단위:백만원)		비용	편익	순비용							
		피규제자	190,038.66		190,038.66							
		피규제자 이외										
		정성분석		한도성여신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 및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								
	주요내용	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적립의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도성여신과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상호금융업권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 편익분석의 경우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어 정성분석 실시										
11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중기영향평가								
	해당 없음	해당 없음		해당 없음								
기타	12.일몰설정 여부	해당없음										

	13. 우선허용· 사후 규제 적용여부	해당없음			
	14.비용관리제 (단위:백만원)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간균등순비용
		미적용	190,038.66	0	24,016.86

현 행	개 정 안
<p>대출금, 여신성가지급금, 가지급금, 신용카드채권, 미수금 <u>및 환매조건부채권매수</u></p> <p>나. 산식</p> <p>2)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대출금, 여신성가지급금, 가지급금, 신용카드채권, 미수금, <u>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및 미사용약정</u></p> <p>나. 산식</p> <p>2)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</p> <p>④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목 미사용약정의 경우에는 <별표 1-1>의 자산건전성 결과에 따라 분류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</u></p>

I.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한도성여신, 지급보증(이하 '한도성여신 등')은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급격한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
 - 이를 감안하여 은행·보험업권은 이러한 여신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체계*를 마련하여 동 여신 취급유인을 통제하고 있으나,
*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서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여 등
 - 상호금융업권을 포함한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
- 상호금융업은 상호간의 인적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
 -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한 지역·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 중
- 한편, 상호금융기관 또한 '마이너스통장대출' 등 한도성여신을 취급중으로, 그 규모는 '20년말 미사용금액 기준 약 39.6조원 수준
 - 다만, 규제 공백으로 인해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의무화되지 않아, 대손충당금의 과소 적립 우려 및 향후 리스크 실현 시 부실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
 - 이에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조합·중앙회의 부실 등은 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

➡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건전성 악화 및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

- “관계기간 합동 「가계부채 관리방안'20.4.29)」”을 통해, 은행·보험 외 2 금융권에도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 발표되었으며,
 -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·보험과 동일한 신용환산율 40%*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여할 것과,
 - * 은행·보험은 '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률 40% 적용 예정
 - 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별 부담 및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*
 - * (상호금융) ('22년) 20% → ('23년) 30% → ('24년) 40%
- 이에 따라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도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무를 반영토록 개정할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비교

○ 규제대안의 내용

규제대안1	대안명	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단계적 도입
	내용	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,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%를 단계적으로 시행(20%→30%→40%)토록 반영
규제대안2	대안명	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즉시 도입
	내용	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,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%를 일률적으로 즉시 도입

○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규제대안1	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 및 업권 내 규제도입 부담 최소화	단계적 도입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간 일시적 규제차익 발생
규제대안2	업권간 규제차익의 신속한 해소와 건전성 강화 가능	충당금 추가적립 등 규제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인 건전성지표 악화 우려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상호금융업권	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예정	-
금융감독원	규제 도입에 찬성하나, 업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준비 및 적용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	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상호금융업권의 ①건전성 강화와 ②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 부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하여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

3. 규제목표

- 타 금융권(은행·보험)에서 시행 중인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경영건전성 강화 및 업권간 규제형평성 제고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상호금융업권은 은행·보험업권들과 마찬가지로 한도성여신(미사용 약정 등)을 취급하고 있으나,
-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 적립의무 등 각각 적용되는 규제가 업권마다 상이하여 규제차익 발생 중

<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금융업권 위험관리(대손충당금 적립의무) 현황 >

구분		은행·보험	저축은행	여전		상호금융
				카드	캐피탈	
총당금 적립의무 여부	한도성여신	○	×	△ (신용카드만)	×	×
	지급보증	○	○	△ (PF대출만)	△ (PF대출만)	(취급금지)

□ 이에 상호금융업권을 포함하여 2금융권 한도성여신의 위험관리체계 (대손충당금 적립의무)를 은행·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 간 규제차익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

<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 등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>

구분			총당금 적립 여부 (신용환산율(%))	
			기존	개선(안)
저축은행	한도성여신		×	('22)20% (23)40%
	지급보증		100%	(좌 동)
여신금융	한도성 여신 (기존)	신판	50%	('23)40%
		현금서비스		
		카드론		
	(신규)	기타 한도성 여신	×	('22)20% (23)40%
지급 보증	부동산PF	100%	(좌 동)	
	부동산PF外	×	100%	
상호금융	한도성여신		×	('22)20% (23)30% (24)40%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: 해당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: 해당 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: 해당 없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: 해당 없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: 해당 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: 해당 없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
: 해당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: 해당사항 없음

관련 국제기준	일치여부	불일치 사유(불일치 시에 한함)

○ 타법사례

: 은행 및 보험업권에서도 감독규정상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기 도입하고 있음

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즉시 도입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190,038.66백만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1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190,038.66		190,038.66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190,038.66		190,038.66
기업순비용		190,038.66	연간균등순비용	24,016.86

Ⅲ. 규제 의 실효성

1. 규제 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: “관계기간 합동 「가계부채 관리방안(20.4.29)」 발표”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된 사항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시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, 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·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

2. 규제 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: 금감원의 검사·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: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: “관계기간 합동 「가계부채 관리방안(20.4.29)」 발표”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되었던 ‘2금융권의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강화’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도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

2. 향후 평가계획

: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(‘21년도 하반기) 이후 유예기간동안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할 예정

3. 종합결론

: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 여신 취급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,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완화 및 규제형평성 제고

별첨
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1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1 :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즉시 도입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190,038.66		190,038.66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190,038.66		190,038.66
기업순비용		190,038.66	연간균등순비용	24,016.86

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

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도성여신과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상호금융업권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편익분석의 경우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어 정성분석 실시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즉시 도입>

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직접비용

(정량)세분류	상호금융업권 및 중앙회
활동제목	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신설에 따른 상호금융업권 및 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
비용항목	기타
비용	190,038,662,425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비균등/비정률
산식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규제비용 산출산식) 규제 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×전년 대비 당해연도 신용환산율 증가수준(신용환산율 40% 대비)*</p> <p>* 상호금융업권은 신용환산율 40% 도입에 대해 '22년 : 20%(전년 대비 △20%p), '23년 : 30%(전년 대비 △10%p), '24년 : 40%(전년 대비 △10%p) 순으로 점진적으로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'22년) 규제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*(1/2=△20%p/△40%p) ○ ('23년) 규제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*(1/4=△10%p/△40%p) ○ ('24년) 규제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*(1/4=△10%p/△40%p)
근거설명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근거설명)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신설 시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는 추가적인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규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호금융업권 및 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을 산정하여 동 규제도입에 따른 비용 도출 - (가정)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도입, 신용환산율 40% 적용을 가정하여 산출 - 이에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내역을 산출하였으며, 총 2,051.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
※ (조합) 1,583억원 증가 / (중앙회) 468.2억원 증가

<상호금융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 내역>

(단위 : 억원)

상호금융조합				상호금융중앙회			
권역	대손충당금			권역	대손충당금		
	'20년말 (A)	변경 (B)	증감 (B-A)		'20년말 (A)	변경 (B)	증감 (B-A)
신협	17,337	17,447	+110	신협	547.4	936.0	+388.6
농협	49,994	51,420	+1,426	농협	829.2	882.7	+53.5
수협	5,180	5,213	+33	수협	87.2	97.5	+10.3
산림	900	914	+14	산림	14.0	29.8	+15.8
계	73,411	74,994	+1,583	계	1,477.8	1,946.0	+468.2

○ 다만, 업권 부담 완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신용환산율(40%)을 점진적으로 도입('22년 : 20%, '23년 : 30%, '24년 : 40%)하므로,

- 연간 규제비용은 위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을 전년 대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증가 수준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함

1) '22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20%(전년 대비 △20%p)이므로 총 신용환산율 도입수준인 40%(△40%)와 대비하여 2/4 적용

2) '23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30%(전년 대비 △10%p)이므로 총 신용환산율 도입수준인 40%(△40%)와 대비하여 1/4 적용

3) '24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40%(전년 대비 △10%p)이므로 총 신용환산율 도입수준인 40%(△40%)와 대비하여 1/4 적용

※ '24년 이후로는 신용환산율의 증가가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음

□ 직접편익

(정성)세분류	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□ 한도성 여신은 거액의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회사에 갑작스러운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등의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나,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도성여신에 대한 총당금 적립의무 등을 도입하여 해당 금융리스크에 대비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전반의 금융리스크 감소가 가능함 ○ 다만, 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
--	--

②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:

편익

(정성)세분류	기업 및 소상공인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 및 전이 방지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성여신 관련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상호금융업권의이 부실해지거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및 투자 위축, 실물경제 악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나, - 대손총당금 적립의무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감소 - 다만, 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

③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편익

(정성)세분류	일반 서민금융이용자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 및 전이 방지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성여신 관련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상호금융업권이 부실해지거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,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될 수 있고 실물 및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나, - 대손총당금 적립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서민금융이용자

	<p>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다만, 이에 대해 정량 분석을 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
--	--